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방안 >



□ 사업내용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전문가 세미나 개최
글로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 수립, 법률·규제·대응 자문 등 전문 컨설팅	글로벌 기술이전 성공률 제고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 글로벌 시장 진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기반 사업화 컨설팅, PoC전략 도출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 및 전문가 세미나 지원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6. 3. 16. (월) ~ '26. 7. 15. (수) (122일간)
- 접수기간 : (1차) '26. 3. 16. (월) 10:00 ~ '26. 5. 14. (목) 17:00까지(60일간)
(2차) '26. 5. 15. (금) 10:00 ~ '26. 7. 15. (수) 17:00까지(62일간)

☐ **지원규모 및 예산**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 (지원예산) 200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 및 예산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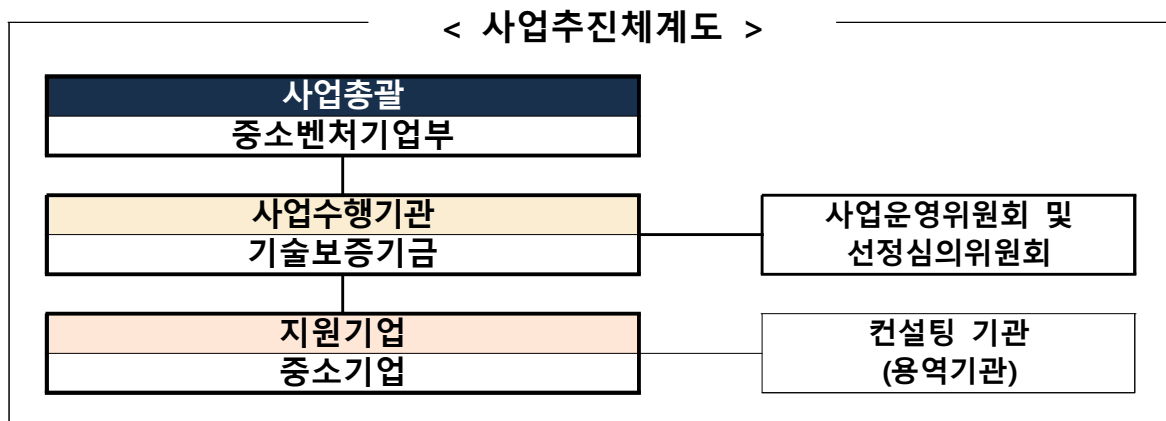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요령(고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

☐ **추진체계**



- **(사업총괄)**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사업 운영, 지원기관 선정, 사업관리 및 비용 집행, 사업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글로벌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진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신청자격)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②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증빙서류 제출 필수)

-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
 -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의 계약 체결을 준비중인 기업 등
- * 기술이전, 합작투자, 공동연구 등 관련 계약

□ 제외대상

- 신청기업(또는 대표자), 계약된 기술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선정 후 협약종료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① 기업부도
- ② 조세 및 공과금(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 중인 경우
- ③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
- ④ 휴·폐업 중인 기업
- ⑤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 ⑥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⑦ 기술이전 기반 계약 내용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대상 계약 건

- 전용실시권 등 독점적 실시에 관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출원중에 있는 기술
(단, 기술보유자 동의하에 전용실시권이 이전된 건은 신청 가능)
- 질권,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기술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술
- 고소·고발, 소송, 무효심판, 취소신청, 강제집행 등 사법 또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기술
- 권리자가 다수인 기술(단, 공동권리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신청 가능)
- 연차등록료 미납중이거나, 납부기한이 6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기술

- 기술이전 기반 계약 대상 기술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기술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법상 창업 여부와 무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기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계약 체결 대상자와 관계기업*인 경우, 해외파트너사가 기업이 아닌 일반 개인(자연인)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에서 출자한 기업은 관계기업 범위에서 제외

※ (참고) 관계기업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관계기업
- ③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의 집단에 소속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컨설팅) ❶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필수) 및 ❷법률·규제, 합작투자·공동연구 등 분야별 세부 컨설팅(택1) 실시

지원분야		지원내용
필수	기술사업화 BM 컨설팅	■ 글로벌 기술이전 전략 수립 ■ 글로벌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모델 수립 등
	시장환경분석 및 현지화 전략수립	■ 진출 국가 시장 조사 및 분석(지원기업 해당 기술 분야) ■ 해당 기술의 현지화 전략 수립, 경쟁기업 및 제품 분석 등
택1	법률 및 규제 자문 지원	■ 지원기업-파트너사 간 기술 계약 컨설팅 ■ 계약서, 법률문서, 기술문서 등 작성 지원 등
	합작투자 및 공동연구 지원	■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법률, 세무, 회계 자문 ■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컨설팅 등
	PoC 전략 도출 지원	■ 기술검증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위한 PoC 전략 수립 ■ PoC 실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및 일정 수립 등

- (전문가 세미나) 글로벌 기술이전 성공률 제고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개최(연 2회 개최 예정)

5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 지원절차

① 시행계획 공고	② 사업 참여 신청	③ 지원대상 선정	④ 협약 및 사업수행
사업 공고	신청서 제출	요건검토 및 선정심의	협약체결 및 컨설팅 등 사업수행
'26.3.16	1차: '26.3.16~5.14 2차: '26.5.15~7.15	1차: '26.5월중 2차: '26.7월중	1차: '26.5월~ 2차: '26.7월~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 조기 종료 가능

□ 신청 주체별 사업 신청방법

신청구분	신청방법
일반기업(단독·각자대표)	온라인 신청
공동대표기업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일부 서류 원본 우편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 신청 마감일 17시까지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스캔 파일(PDF) 각각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 (유의사항)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제반서류의 제출일이 상이한 경우, 신청기한 내 신청서와 제반서류가 모두 유효하게 제출(도착일 기준)된 날을 신청일로 봄
- **(공동대표기업)**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연번 1,2,3,4에 대하여 공동대표 2인의 법인인감 날인하고 제반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 원본제출 서류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 영업일(1차: 5.13, 2차: 7.14)일까지 기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공고신청 및 신청방법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① 대상요건 확인 및 회원가입 -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https://tb.kibo.or.kr)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고문 등을 통해 사업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 확인 ② 신청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온라인만 가능) - (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 신청 및 공모 → 정부지원사업 →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③ 서명 등록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기업, 대표자 정보이용동의” 필수 ☞ 사전 준비사항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등 (법인기업) 법인 사업자 인증서 및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등 - (유의사항) 공동대표인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첨부4)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제출 ☞ 보내실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심주형 차장(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④ 최종 신청 - 최종 확인 후 제출(제출서류 중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 자격 상실) ☞ 제출완료된 사업참여 신청건은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 작성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필히 점검 요망 ☞ 신청기간(종료일 17:00시) 내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구분	연번	서식명
공통	1	신청서(계약완료기업: 첨부1-1, 계약예정기업: 첨부1-2)
	2	사업계획서(계약완료기업: 첨부 2-1, 계약예정기업: 첨부2-2)
	3	중복지원여부 확인서(첨부3)
	4	정보이용동의서(첨부4)
	5	최근 3개년('23~25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최근 3개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 제출 - 업력 3년 미만 시 설립(또는 개업) 이후 재무제표 제출 -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으로 당기결산 미확정 기업은 '개시대차대조표' 제출 -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정) - 발급처: 국세-홈택스 (www.hometax.go.kr) / 지방세-정부24 (www.gov.kr) - 개인기업은 대표자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신청접수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7	중소기업 확인서(신청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경우만 인정)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처: 중소벤처24 (www.smes.go.kr)
	8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 홈택스 (www.hometax.go.kr)
	9	(해당시) ESG경영기업 가점사항 자료 제출(참고1)
계약 완료기업	10	기술이전기반 계약서(자체양식)
	11	'해외파트너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3	'해외파트너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계약 예정기업	12	계약예정확인서(첨부5)

6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 선정평가

- (서류접수) 신청 마감일 17시까지 제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접수 처리
- (요건검토) 신청대상 자격요건 충족여부,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 계약 체결 여부 등을 포함한 신청기업 제출서류의 유효성 검토

- 제출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선정제외 처리되며, 제출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대상으로 추천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평가방법)** 기보 내·외부 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건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하여 심의 진행
- **(선정평가)** 요건검토를 통과한 지원기업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 예정

■ 선정평가 기준 참고1

구분(배점)	평가항목	배점
해외 파트너사 사업수행 역량 (20점)	해외 파트너의 신뢰도 및 사업 적합성	10
	협력 관계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기술이전 계약의 구체성 (20점)	계약 구조의 합리성	10
	기술료 체계의 적정성	10
글로벌 시장 법률·규제 대응 및 전략 인식 수준 (15점)	법률 리스크 인식 및 대응	10
	규제·인허가 대응 계획	5
실행계획의 구체성 (25점)	일정 및 단계별 목표	15
	정량적 목표설정	10
사업 성공 가능성 및 파급효과 (20점)	사업 성공 가능성	10
	파급효과 및 확산성	10

- **(선정통보)** 선정 여부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예정

□ (협약체결) 선정기관은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 협약기간 경과 시 재협약 체결이 불가함에 따라, 협약기간 내 사업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실 것

- ①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입력 오류·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③ 선정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④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기술보증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⑥ 과제선정 후 협약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해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⑦ 지원기업은 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향후 3년간 기보의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⑧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제21조에 따라 선정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첨부6)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릅니다.

☐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 051-606-7396, 7640 ✉ infra@kibo.or.kr

☐ 관련 서식

< 관련 서식 >		
참고자료	참고1	가·감점 사항
	참고2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첨부서식	첨부1-1	신청서(계약완료기업용)
	첨부1-2	신청서(계약예정기업용)
	첨부2-1	사업계획서(계약완료기업용)
	첨부2-2	사업계획서(계약예정기업용)
	첨부3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첨부4	정보이용동의서
	첨부5	계약예정 확인서
	첨부6	이의신청서 양식

□ 가점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아래의 가점사항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시 가점사항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구분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계약내용 관련	기술이전 계약 시 선급금 수령 완료	2점	○ 기술이전 계약서 (선급금금액, 지급시점, 지급방식 명시) ○ 선급금 지급 증빙내역 (계좌입금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술이전 계약서에 최소 매출보장(MG)조항 명시	2점	○ 기술이전 계약서 (MG조항 및 최소 로열티 또는 최소 지급 금액 등 명시)
	현지 파일럿 진행 여부	1점	○ 현지 실증 수행확인서 ○ 파일럿 테스트 결과보고서 등
ESG실천기업 판별표 충족시	ESG평가등급 보유기업	1점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활용중인 ESG평가기관의 ESG평가등급 확인증
	ESG경영 실천기업 (E-S-G 영역별 실적을 각각 1개 이상 보유한 경우)		아래 판별표* 영역(E,S,G)별 증빙서류 각 1부

* ESG경영 실천기업 판별표(신청인 확인용)

구분		판별기준(하나라도 충족)	제출자료	가점
유형1		ESG 평가등급 보유기업	ESG평가등급 확인증	1점
유형2		E-S-G각 영역별 요건 모두 충족 (아래 3가지 모두 해당)	아래 개별서류 합산	1점
①	환경(E)	ISO14001, ISO50001,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 저탄소 제품인증 中 1	해당 인증서/지정서 사본	
②	사회(S)	ISO45001, 가족친화기업인증,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지정, 성과공유기업인증 中 1		
③	지배구조(G)	ISO37001, ISO373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확인서,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서 中 1		

□ 감점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구분	감점내용	감점	확인방법
사업수행 관련	과거 본 지원사업 성과조사 미응답 기업	1점	사업수행기관 확인
	과거 본 지원사업 미제출·미완료 기업	2점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인터넷)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main)
(경로: 고객마당 > 반부패신고센터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유선) 051-606-7551, 051-606-7563, 051-606-7568

첨부1-1
신청서(계약완료기업용)
「2026년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계약완료기업용)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기업 소재지			
담당자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글로벌 기술 이전	이전기술명			
	진출 희망 국가	☐ 베트남, ☐ 태국, ☐ 인도네시아, 기타()		
	계약 유형	☐ 기술이전, ☐ 기술협력, ☐ 합작투자법인 설립, ☐ 공동 R&D, ☐ 기타()		
	해외 파트너사			
	해외인증보유내역 (유효기간 내 인증서 제출)	☐ FSSC22000 ☐ ISO22000 ☐ Global GAP ☐ Gluten-free ☐ USDA NOP ☐ FDA ☐ SQF ☐ 기타()		
	기술 분류	☐ 기계, ☐ ICT, ☐ 식품, ☐ 화학, ☐ 수처리·환경, 기타()		

※ 첨부자료

1. 사업계획서(계약완료기업용)
2.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3. 정보이용동의서
4.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이전기술 사업화역량 및 성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보증기금 귀중

첨부1-2

신청서(계약예정기업用)

「2026년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계약예정기업用]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기업 소재지			
담당자	담당자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글로벌 기술 이전	이전예정 기술명			
	진출 희망 국가	☐ 베트남, ☐ 태국, ☐ 인도네시아, 기타()		
	예정 계약 유형	☐ 기술이전, ☐ 기술협력, ☐ 합작투자법인 설립, ☐ 공동 R&D, ☐ 기타()		
	계약 예정 해외 파트너사			
	해외인증보유내역 (유효기간 내 인증서 제출)	☐ FSSC22000 ☐ ISO22000 ☐ Global GAP ☐ Gluten-free ☐ USDA NOP ☐ FDA ☐ SQF ☐ 기타()		
	기술 분류	☐ 기계, ☐ ICT, ☐ 식품, ☐ 화학, ☐ 수처리·환경, 기타()		

※ 첨부자료

1. 사업계획서(계약예정기업用)
2.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3. 정보이용동의서
4. 계약예정 확인서
5. 그 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이전기술 사업화역량 및 성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보증기금 귀중

첨부2-1

사업계획서(계약완료기업용)

「2026년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계약완료기업용)

I. 기업 현황

1 기업체 개요

기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번호	
				근로자수	최근월말 ()명, 전년도 ()명
주요제품		매출 현황	2025년 ()백만원, 2024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지식재산권 현황	☐ 등록 ()건 ☐ 출원 ()건		☐ 디자인등록 ()건 ☐ 프로그램등록 ()건 ☐ 상품권등록 ()건 ☐ 기타() ()건		
기술개발 환경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기술인력만 확보 ☐ 별도의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이전기술명					
해외진출 경험					
년 월	연 혁 (설립,증자,대표자 변경, 업종변경 등)				

2 대표자 등 (1.대표자(), 2.공동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현 주 소					
최종학력	년도 월	학 교		학과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기 간	근무처	업 종	담당업무	최종 직위
	년 월- 현 재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공동 대표자, 각자 대표자, 실제 경영자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위 표를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

③ 기술인력 현황

직 위	성 명	나 이	근속년수	최종학력	주요경력

II. 해외파트너사 협력 현황 및 계약구조

① 해외파트너사 정보

기업명		매출현황	'25년 ()백만원 '24년 ()백만원
설립연도		최근 매출실적	(월말 현재) 백만원
소재 국가		주요 사업분야	
제조시설 보유여부	☐ 있음 ☐ 없음	유통망 보유여부	☐ 있음 ☐ 없음
유사기술 취급경험	※ 해외 파트너사에 확인하여 해당사항 체크하실 것 ☐ 기술이전 경험 보유 ☐ 비슷한 기술을 생산·판매·유통·라이선싱 경험 보유 ☐ 공동개발·ODM·OEM 경험 보유 ☐ 관련 인증·인허가 경험 보유		

② 기술이전 계약 주요조건

기술범위		계약체결일	
주요 의무사항		계약기간	
독점계약 여부	☐ 독점 ☐ 비독점	계약종료 해지조건	
기술료 구조	☐ 선급금 ☐ 단계적 기술료 ☐ 경상기술료	적용지역	
매출예상구조			
수익인식시점			

③ 계약 리스크 자가진단

계약 리스크	최소 매출보장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 Y	☐ N
	로열티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 Y	☐ N
	분쟁 해결을 위한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 Y	☐ N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보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기술임치, 기술신탁 등)	☐ Y	☐ N
	현지 법규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 Y	☐ N

Ⅲ. 이전대상 기술개요

기술의 개요	(기술명, 기술원리, 주요 기능 및 차별성 등 핵심 내용 간략 작성)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목표시장 규모, 적용산업, 사업화 적합성, 해외파트너사 협력 시 기대효과 작성)

Ⅳ. 글로벌 법률·규제 대응 계획

계약관련 법률 리스크 관리계획	(해외 계약 수행 시 예상 법률 리스크, 분쟁 대비 전략 등 작성)
해외 규제·인허가 확보전략	(해외·규제 인허가 대응일정, 제품·기술관련 인증 획득계획 등)

Ⅴ. 향후 계획 및 컨설팅 관심분야

① 사업화 로드맵

구분	1~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기술이전 절차												
시제품 공급												
인증·인허가 대응												
시장 확대·성장												

※ 구분지표는 지원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② 사업 확산전략

글로벌 시장 확장계획	
후속 계약 가능성	

③ 컨설팅 관심분야

컨설팅 희망분야 (중복선택 가능)	필수 사항	기술사업화 BM 컨설팅	☐ 글로벌 기술이전 전략 수립 ☐ 글로벌 기술이전을 기반 사업화 모델(BM) 설계
		시장환경분석 및 현지화 전략 수립	☐ 진출 국가 시장 조사 및 분석(지원기업 해당 기술 분야) ☐ 해당 기술의 현지화 전략 및 경쟁기업·제품 분석 ☐ 시장 진입 전략 및 사업화 로드맵 수립
	선택 사항	법률 및 규제 자문 지원	☐ 국제 기술이전 계약 법률 검토 및 리스크 자문 ☐ 계약서·법률문서·기술문서 작성 지원
		합작투자 및 공동연구 지원	☐ 합작투자법인 설립 관련 법률·세무·회계 자문 ☐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컨설팅
		PoC 전략 도출 지원	☐ 기술검증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위한 PoC 전략 수립 ☐ PoC 실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및 일정 수립
	기타	☐ 최소매출보장(MG) 협상 전략 ☐ 현지 인허가 및 인증 대응 전략 ☐ 수출입 규제 대응 자문 ☐ IP 보호 및 기술보안 전략 ☐ 분쟁 대응 전략 ☐ 기타(직접 기재:)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기술보증기금 귀중

「2026년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계약예정기업용)

I. 기업 현황

① 기업체 개요

기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번호	
				근로자수	최근월말 ()명, 전년도 ()명
주요제품		매출 현황	2025년 ()백만원, 2024년 ()백만원, 2023년 ()백만원		
지식재산권 현황	☐ 등록 ()건 ☐ 출원 ()건		☐ 디자인등록 ()건 ☐ 프로그램등록 ()건 ☐ 상품권등록 ()건 ☐ 기타() ()건		
기술개발 환경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기술인력만 확보 ☐ 별도의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이전예정 기술명					
해외진출 경험					
년 월	연 혁 (설립,증자,대표자 변경, 업종변경 등)				

② 대표자 등 (1.대표자(), 2.공동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현 주 소					
최종학력	년도 월	학교		학과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기 간	근무처	업 종	담당업무	최종 직위
	년 월- 현 재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공동 대표자, 각자 대표자, 실제 경영자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위 표를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

③ 기술인력 현황

직 위	성 명	나 이	근속년수	최종학력	주요경력

④ 이전예정대상 기술개요

II. 해외파트너사 협의현황

① 계약 예정 해외파트너사 정보

기업명		매출현황	'25년 ()백만원 '24년 ()백만원
설립연도		최근 매출실적	(월말 현재) 백만원
소재 국가		주요 사업분야	
제조시설 보유여부	☐ 있음 ☐ 없음	유통망 보유여부	☐ 있음 ☐ 없음
유사기술 취급경험	※ 해외 파트너사에 확인하여 해당사항 체크하실 것 ☐ 기술이전 경험 보유 ☐ 비슷한 기술을 생산·판매·유통·라이선싱 경험 보유 ☐ 공동개발·ODM·OEM 경험 보유 ☐ 관련 인증·인허가 경험 보유		

※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주실 것

② 기술이전 협의 주요내용

협의단계	☐ NDA체결 ☐ LOI 체결 ☐ MOU체결 ☐ 계약서 초안 교환 ☐ 가격 협상중 ☐ 기타		
현재까지 합의 된 내용			
기술범위		독점여부	☐ 독점 ☐ 비독점
예상사업모델	☐ 기술료중심모델(로열티 수취) ☐ 제품 판매중심 모델 ☐ 기타	예상계약예정일	

③ 계약 체결 준비도 자가점검

계약 리스크	기술이전 대상 기술의 권리관계가 명확히 되어 있다.	☐ Y	☐ N
	해외파트너사와 기술이전 범위 및 조건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다.	☐ Y	☐ N
	선급금·로열티 등에 대한 기본 합의가 있다.	☐ Y	☐ N
	독점여부 및 적용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다.	☐ Y	☐ N
	계약 체결 시 예상되는 법률·규제 리스크를 검토하였다.	☐ Y	☐ N

Ⅲ. 기술이전 계약 체결 추진구조 및 해결과제

① 기술이전 계약 추진구조

예정 계약유형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공동사업형 ☐ 기타	예상 기술료 구조	☐ 선급금 ☐ 경상기술료 ☐ 최소보장금 ☐ 매출연동방식
---------	---	-----------	---

② 애로사항 및 해결과제

계약성사 관련 애로사항	☐ 가격·기술료 협상 어려움 ☐ 계약 구조 설계의 전문성 부족 ☐ 국제계약 법률 리스크 ☐ 해외 규제·인허가 불확실성 ☐ 기술 보호 및 IP전략 미흡 ☐ 기타()	본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계약 구조 고도화 ☐ 기술료 산정 논리 정립 ☐ 국제계약서 검토 및 수정 ☐ 규제·인허가 사전대응 전략 수립 ☐ 계약 체결 지원 로드맵 수립 ☐ 기타()
--------------	--	----------------------	---

Ⅳ. 추진 계획 및 컨설팅 관심분야

① 추진계획

구분	1~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계약협상				
법률검토				
규제검토				
계약체결				

※ 구분지표는 지원기업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가능함.

② 컨설팅 관심분야

컨설팅 관심분야 (중복선택 가능)	필수 지원	기술사업화 BM 컨설팅	☐ 글로벌 기술이전 전략 수립 ☐ 글로벌 기술이전 기반 사업화 모델(BM) 설계
		시장환경분석 및 현지화 전략 수립	☐ 진출 국가 시장 조사 및 분석(지원기업 해당 기술 분야) ☐ 해당 기술의 현지화 전략 및 경쟁기업·제품 분석 ☐ 시장 진입 전략 및 사업화 로드맵 수립

	선택 지원	법률 및 규제 자문 지원	☐ 국제 기술이전 계약 법률 검토 및 리스크 자문 ☐ 계약서·법률문서·기술문서 작성 지원
		합작투자 및 공동연구 지원	☐ 합작투자법인 설립 관련 법률·세무·회계 자문 ☐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컨설팅
		PoC 전략 도출 지원	☐ 기술검증 및 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위한 PoC 전략 수립 ☐ PoC 실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및 일정 수립
		기타	☐ 최소매출보장 협상 전략 ☐ IP 보호 및 권리관리 전략 ☐ 분쟁 대응 및 현지화 전략 ☐ 기타(직접 기재:)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점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기술보증기금 귀중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사 업 명	2026년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지 원 기 업 명	
대 표 자	
기 술 명	

1. 당사는 해당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단, 참여국가가 상이한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지 않음.
2. 타 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기술보증기금이 중복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조회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기업명 (인)

대표자 (인)

기술보증기금 귀중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귀중

귀사의 20자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 등에 따른 기보의 선정평가 및 사업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귀사의 기업(신용)정보를 기보와 업무수탁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본 사업 운영·관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통계업무 -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기술지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사업 관련 업무(선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등 포함)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이란 선정평가 결과 귀사가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경우 '선정 결과 통보 시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을 말합니다.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지원신청 및 기보의 선정평가, 지원기업 선정 등에 따른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본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시 본 사업에 따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기업(신용)정보	
 기업정보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SNS 주소 등
 신용거래정보	대출, 보증, 투자,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거래, 지식재산공제부금 등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정보, 백화점 등 비금융권연체정보, 기업의 실제경영자 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기업의 연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 및 면적정보, 소유권 변동일자, 공탁금정보, 부동산 권리내용 등) 등
 공공정보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세금 체납정보 및 공과금 납부정보, 채무조정(화생·파산 등)에 관한 정보,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직장명 등, 자격취득알상실일, 보수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고용보험·성과공유기업·근로시간 등 근로환경·고용관련 법령 위반 등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관련 정보 등
 ※ 기타정보 등	기업신용등급, 기술정보, 기술신용정보, 기술평가정보, 지식재산권, 신용정보 제공기록, 신용조회기록, 지식재산공제거래·기술거래·기술신탁·기술임치·기술자료거래기록등록 업무 관련 정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준수 결과정보 등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2

조회에 관한 사항

(필수사항)

조회 대상 기관	제공받는 자와 동일
조회 목적	- 본 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본 사업 운영·관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의행,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본 사업 관련 업무(선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등 포함) 종료일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지원신청 및 기보의 선정평가, 지원기업 선정 등에 따른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본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시 본 사업에 따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3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선택사항)

제공받는 자	①중소벤처기업부, ②중소기업진흥공단, ③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④창업진흥원, 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⑥중소기업유통센터, ⑦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⑧한국벤처투자(주), ⑨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목적	- 중소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보유 및 이용기간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항목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물

기보가 위 기업(신용)정보를 중소기업부에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를 위 중소기업부 유관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4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 제공·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선택사항)

제공받는 자	①정부(중앙부처, 지자체), ②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제공목적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 최근 3년 전부터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정부 및 중소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업종코드, 설립일자, 주요제품 등 기업 기본정보 ■ 기술이전 신청정보 등 관련 정보 ■ 해당 사업 선정여부, 최종평가결과 등 관련 정보

기보가 위 기업(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제공하고, 제공받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5

“세무회계자료의 온라인 제출”에 관한 사항

(선택사항)

제출목적	- 본 사업 신청기업 선정평가 및 본 사업 운영·관리
동의의 효력기간	- 본 사업관련 업무(선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등 포함) 종료일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고객께서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항목	결산확정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자료, 납세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주주명부 등
동의내용	- 위 업무의 처리를 위해 기보가 세무회계자료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경우, 귀사가 직접 또는 귀사의 별도 동의없이 귀사의 가장 대행 세무사(회계사)가 기보에 세무회계자료를 전송 - 온라인 제출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귀사가 수수료를 부담

위 세무회계자료의 온라인 제출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6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수집·조화·활용에 관한 사항

(선택사항)

제공받는 자	①대학, ②공공(민간)연구기관, ③기술지주회사, ④(공공 또는 민간)기술거래기관, ⑤기술거래·사업화 유관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제공목적	■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 기술거래(기술이전 및 공동R&D 등)를 위한 알선 및 중개 - 기술거래·사업화 지원사업 홍보 등
보유 및 이용기간	기술거래 등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기보 및 ‘제공받는 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공항목	■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업종, 주요제품, 전화번호·E-mail 주소 등 기업 기본정보 ■ 국가R&D 참여 정보 ■ 기술이전 신청정보 등 관련 정보 ■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정보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 또는 인증정보 ■ 매출액, 설립후 기간, 종업원수, 기업부설연구소(전담기관) 보유여부, 특허보유기업 여부 (건수 포함), 정부공인인증(NET, NEP, 녹색인증 등)

기보가 위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기보 기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가 수집·조화·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상기 동의내용(1~7번)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https://tb.kibo.or.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 기보가 고객의 신용정보 처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대표이사	
사업자번호	
또는 법인번호	
연락처	

본인확인(기보직원)

직위 :

성명 :

(인)

본 동의서의 내용과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화 관련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안내문 및 동의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까?

수령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귀중

귀 기관과의 20자 글로벌 진출기어 역량강화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 등에 따른 기보의 선정평가 및 사업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제3자가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기술지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등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 본 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본 사업 운영·관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의행, 통계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사업 관련 업무(선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등 포함)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이란 선정평가 결과 귀사가 지원기업으로 미 선정된 경우 '선정 결과 통보 시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을 말합니다.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의행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지원신청 및 기보의 선정평가, 지원기업 선정 등에 따른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본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시 본 사업에 따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개인 SNS 주소,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결혼 여부,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임대차 계약일, 확정일자 부여일 등), 학력·경력 정보, 직장정보(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자격취득일, 급여정보 등), 수상경력, 보유 자격증 등 대출, 보증,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등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대위변제정보,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백화점 등 비금융권연체정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등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 및 면적정보, 소유권 변동일자, 공탁금정보, 부동산 권리내용 등) 등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세금 체납정보 및 공과금 납부정보, 채무조정(화생·파산·면책 등)에 관한 정보,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직장명 등, 자격취득일상실일, 보수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등), 자격취득일,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대여금고 이용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기록 등 개인신용평점, 기술정보, 기술신용정보, 기술평가정보, 지식재산권, 국외이주신고정보, 신용 정보 제공기록, 신용조회기록,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준수 결과정보, 기타 보증 등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일반개인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기타정보 등	

2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제공받는 자와 동일
조회 목적	- 본 사업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본 사업 운영·관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의행 및 통계업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본 사업 관련 업무(선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등 포함) 종료일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지원신청 및 기보의 선정평가, 지원기업 선정 등에 따른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본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시 본 사업에 따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개인(신용)정보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3

제공에 관한 사항

(선택사항)

제공받는 자	고객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업체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고객만족도조사 리서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사업 관련 업무(선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등 포함)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이란 선정평가 결과 귀사가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경우 '선정 결과 통보 시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을 말합니다.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제공 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적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사업 신청 및 사업 지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고객만족도조사"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대표자 개인 E-mail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수집·이용·제공·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제공받는 경우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기보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기보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기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 명 : (서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연 락 처 :

본인확인(기보직원)

직위 :

성명 :

(인)

본 [필수]동의서의 내용과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관련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안내문 및 동의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까?

수령함

「2026년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계약예정 확인서

1. 기업체 개요

기업명			법인(주민)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본사주소					
담당자		휴대폰		이메일	

2. 예정계약유형

구분	☐ 기술이전	☐ 기술협력	☐ 합작투자법안설립	☐ 공동 R&D	☐ 기타()
----	-------------------------------	-------------------------------	-----------------------------------	---------------------------------	--------------------------------

3. 예정기술 권리형태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권
	☐ 프로그램	☐ 저작권	☐ 노하우	☐ 기타()

4. 계약예정 해외 파트너사

기관명	
-----	--

5. 기술이전계약 예정기술

기술명	
-----	--

6. 기술이전계약 예정일

예정일	
-----	--

본 확인서는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기술이전 예정확인서로 위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며, 과제선정 후 본계약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과제선정에 취소되어도 이익을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 . . .

해외 파트너사	기관명 :	지원기업	업체명 :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 (인)

이의신청서 양식

1. 과제현황

사 업 명			
지 원 기 업		대 표 자	
사 업 비 (천 원)			

2. 이의신청 현황

이의신청자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 신청 유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기타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
	선정평가()	- 사업비 정산결과 () -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 사업비 지급중단(),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가산금·체납처분()
결과통보일		
결 과 요 약	* 통보받은 결과 주요 내용을 요약	
이의 신청 상세내용	* 통보받은 결과에 대응하여 이의내용을 작성 * 별지 작성 가능	
상기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신청기관 : (직인) 기술보증기금 귀중		

별 첨 : 이의신청의 주장 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소명 자료를 제출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접수



이의신청평가



결과 안내

지원기업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의거하여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처리 기간의 연장이 가능 합니다.(최장 120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Smart Tech-bridge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